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4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김위상 · 박준태
최수진 · 박성민 · 김선교
고동진 · 강승규 · 김성원
유상범 · 최은석 · 김도읍
강명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(이하 “촉진지구”라고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, 주거 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·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2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7호(종전의 제26호) 중 “제24호”를 “제25호”로 한다.

25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,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~ 2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7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.
25. (생 략)	1. ~ 24. (현행과 같음)
26. 제1호부터 제18호까지,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	25. 「 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 」 제18조의4에 따른 <u>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,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</u>
② ~ ④ (생 략)	26. (현행 제25호와 같음)
	27. ----- -----제25호 -----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